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71

발의연월일: 2022. 2 14.

발 의 자: 송재호 · 이형석 · 천준호

이상헌 • 위성곤 • 이장섭

윤준병 • 민형배 • 김정호

오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품권, 선물하기 등 전자화폐가 대규모로 발행되고 있음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현행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록하는 경우금융당국의 사각지대로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판매를 대행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의 피해 확산에 일조하고 판매수수료를 챙기고도 이용자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전자화폐 발행규모가 커지면서 등록업자 역시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조치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자함.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 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를 대행한 자로 하여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9조).
- 나.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로 하여금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가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전제로 직접 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및 제51조).
- 다. 현행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조치명령 또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주기적으로 해당 위반사항을 감독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및 제51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자금융업자"를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판매를 대행한 자(선불전자지급수단 대행판매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④ 제3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는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선불충전금의 예치) 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 단발행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하기 위하여 해당 발행자에 게 사전에 지급한 금전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 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한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발행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한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예치기관은 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화폐 보유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이하 이 조에서 "보유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 선불충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보유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1.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선불충전금을 보유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발행자 및 예치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예치받은 선불충전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

- 야 한다. 이 경우 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 에 따라 다른 예치기관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 ⑥ 발행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예치기관의 선불충전금 관리·운용, 그 밖에 선불충전금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의 비율은 발행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9조의3(발행자의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① 발행자는 제19조의2제 1항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제외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운용대상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발행자가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보증기관이 보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요건, 체결 방법, 제2항에 따른 지급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4(보유자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 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발행 자는 해당 내용을 보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2(조치명령 및 임시중지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일시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하는지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④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제5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9조에 따른"으로, "받거나"를 "받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예치하지 아 니하거나 운용대상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6.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연대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3조(선불충전금의 예치 및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 사 또는 전자금융거래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9조 의2 및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u>전자</u>금융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자"라 하다)-----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 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판매를 대행한 자(선불전자지급수단 대행판매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한정한 다)는 제1항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u>기록된</u> 잔액의 환 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대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신 설> 지는 자는 해당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자에게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기록된 잔액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2(선불충전금의 예치) 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 급수단발행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 (이용자가 전자화폐 또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하기 위하 여 해당 발행자에게 사전에 지 급한 금전으로서 대금결제, 양 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 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 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 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 치한 선불충전금을 상계 · 압류 (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 며, 발행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 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외에는 예치한 선불충전금 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예치기관은 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화폐 보유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이하 이 조에서 "보유자"라 한다.

- 1.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 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선불충전금을 보유 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발행자 및 예치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즉시통지하여야 한다.
- ⑤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예치받은 선불충전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 설>

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다 른 예치기관에 다시 예치하여 야 한다.

⑤ 발행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예치기관의 선불충전금 관리·운용, 그 밖에 선불충전금 관리에게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예치의 비율은 발행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3(발행자의 지급보증보 험계약 체결) ① 발행자는 제1 9조의2제1항에 따라 예치한 금 액을 제외한 선불충전금을 직 접 운용(지급준비금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하는 경우,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 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발행자가 제19조의2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보유

<신 설>

<신 설>

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요건, 체결 방법, 제2항에 따른 지급의 절차·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보유자 보호조치의 고 지의무) ① 제19조의2 또는 제 19조의3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계약 을 체결한 발행자는 해당 내용 을 보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3조의2(조치명령 및 임시중지 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기관이 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 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수 있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 지시를 받아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하는지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④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업무를 행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요청할 수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금

제49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략)
- 5. 제28조 또는 <u>제29조의 규정</u>
 <u>에 따라</u> 허가를 <u>받거나</u> 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 6. ~ 10. (생 략)
- ⑥ ~ ⑧ (생 략)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1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제3</u> -----

<u> 융위원회에</u>	이의	를	제기	할	수
<u>있다.</u>					
⑥ 금융위원	회는	제5	5항에	따	라
이의가 제기	되었	을	때에	는	지
체 없이 법	원에	ユ	사실	을	통
보하여야 하	며, 통	보	를 빋	은	법
원은 「비송	사건	절치	냅_	에	叫
라 재판을 한	<u> </u>				
⑦ 제6항에	따른	재국	판을	할	때
에는 「비송	사건?	절치	냅_	제	15
조를 적용하	지 아	니	한다.		
49조(벌칙)	1 ~	- (1 (현 행	과
같음)					
⑤					
1. ~ 4. (현	행과	같음	$\left(\frac{1}{2}\right)$		
5	<u>Z</u>	129	조에	प्र	를-
	받지	아니	하기	<u> </u> 나-	
	_				
6. ~ 10. (ই	행과	같	음)		
⑥ ~ ⑧ (₹] 행과	같	음)		

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4. (생략)

<신 설>

② ~ ④ (생 략)

<u>\$\overline{\ove</u>

- 1.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용대상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2. ~ <u>5.</u>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6.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 ④ (현행과 같음)